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3
----------	----

2022. 10. 21.(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호경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2년 9월 30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4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0월 13일

-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호경 의원)

가. 제안이유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병역명문가”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가족” 의 뜻 변경(안 제2조)

○ 기타 조문 정비 등(안 제4조,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개정안은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뜻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개정안은 병무청 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개정으로 “병역명문가” 및 “병역명문가 가족”의 정의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 제2조제3호 중 “모”를 “부모”로 명시함.

- 제4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정비함.

- 제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정비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관련 부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
- 입법예고(‘22.10. 4.~‘22.10.1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은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뜻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모”를 “부모”로 한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병역명문가</u>”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u>현역복무</u>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모두 <u>현역복무</u>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p> <p>2. (생략)</p> <p>3. “<u>병역명문가 가족</u>”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u>모</u>,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p> <p>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생략)</p> <p>② 도지사는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u>관하여</u> <u>필요한</u>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p>	<p>제2조(정의) ----- -----.</p> <p>1. “<u>병역명문가</u>”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u>현역복무</u> 등을 성실히 마쳐 「<u>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u>」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u>현역복무</u>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u>군 의무복무기간</u>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 ----- <u>부모</u> ----- -----.</p> <p>제4조(홍보 및 예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범위</u> ----- ----- <u>필요한</u> ----- -----.</p> <p>제6조(시행규칙) -----</p>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 필요한 -----
-----.

관계법령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21>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0. 5. 4., 개정 2012. 11. 21., 단서신설 2012. 11. 21., 개정 및 단서삭제 2013. 12. 11., 개정 2019. 3. 11., 2020. 2. 26.>
2. <생 략>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신설 2012. 11. 21., 개정 2013. 12. 11., 2020. 2. 26.>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제외 대상) ① 지방병무청장은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한다. 다만, 직계비속 여성이 현역복무 등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병역이행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1., 2020. 2. 26.>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입영 후 신분이 변동되어 이전 신분의 의무복무기간이 지난 경우 포함). 다만, 현역 복무 중 전사·순직한 사람이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이 있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9. 3. 11., 개정 2020. 2. 26.>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강점기에 독립군·한국광복군 등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개정 2020. 2. 26.>

②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1. 30., 본항개정 2019. 3. 11.>

1.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군무 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다만, 현역 등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에 따라 단기간 현역복무를 하였거나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가. 귀휴 전역 정교사(구 병역법 1957. 8. 15., 제8조)

나. 해군 예비역장교·하사(구 병역법 1981. 12. 31., 제62조의2)

다. 교대예비역 하사(RNTC)(구 병역법 1983. 12. 31., 제51조)

라. 예비역 공중보건 의사(구 병역법 1978. 12. 5., 제30조)

마. 자연계교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9조의 2)

바. 특수전문요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0조의 2)

사. 승선근무예비역(병역법 제21조의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계비속 남성 중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는 해가 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9. 3. 11., 개정 2020. 2. 26.> [본조신설 2013. 12. 11.]

제18조(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 <개정 2006. 10. 12., 2008. 12. 12., 2010. 5. 4., 2012. 11. 21., 2019. 3. 11.>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서 및 별표 2의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증서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발급(출납)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08. 4. 16., 2008. 12. 12., 2010. 5. 4., 2012. 11. 21., 2019. 3. 11.> <이하 생략>